

의안번호	2215553
의 퇴 인	추미애의원
회 답 일	2026.1.13.
추계번호	25D7190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(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)	군사경찰과 소속 군인과 군무원(제43조제1호)으로 하여금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에 대하여 수사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4조(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 제44조¹⁾는 군사법경찰관 중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은 내란의 죄, 외환의 죄, 반란의 죄, 이적의 죄 등 군사보안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, 군사경찰과 소속 군사법경찰관은 그 외의 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

1) 「군사법원법」

제44조(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)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(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)한다.

1.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: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

2.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: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, 「군형법」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「국가보안법」, 「군사기밀보호법」,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(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)에 규정된 죄

3. 삭제

- 현행법 제43조²⁾는 군사법경찰관을 ① 군사경찰과 소속 군인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, ②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인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, ③ 검찰수사관으로 열거하고 있음
- 개정안은 군사경찰과 소속 군사법경찰관에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, 수사권한을 군사보안 관련 범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군사경찰과 소속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한(직무범위)을 확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군사경찰과 소속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한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, 군사보안 관련 범죄의 사건 수, 군사보안 관련 범죄의 수사 인력과 수사비용 등의 증가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
- 다만, 군사경찰과 소속 군사법경찰관의 증원 규모, 군사보안 관련 범죄의 수사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, 현시점에서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2) 「군사법원법」

제43조(군사법경찰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.

1. 「군인사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(이하 "군사경찰과"라 한다)의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
2.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(이하 "군사안보지원부대"라 한다)에 소속된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
3. 삭제
4. 검찰수사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